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805
----------	-------

발의연월일 : 2026. 3. 27.

발 의 자 : 김태선·장철민·이용선
허영·허종식·이용우
김주영·정춘생·윤후덕
박민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난임치료휴가를 보장하고 있으나, 체질개선, 배란유도 등 장기간·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난임치료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행 휴가 기간과 유급 보장 수준으로는 치료 과정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해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난임치료휴가는 근로자 본인의 치료에 한정되어 있어 배우자의 시술 이후 안정과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부족하고, 이에 따른 돌봄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난임치료휴가 기간 및 유급휴가 범위를 확대하고, 배우자의 난임치료에 대해서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난임 가구의 실질적인 치료 여건을 보장하고, 일·가정 양립과 저출산 대응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8조의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제1항 본문 중 “6일”을 “14일”로, “2일”을 “7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사업주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는 배우자의 시술 직후 안정 등 돌봄을 위한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휴가 기간은 4일 이내로 하며 그 중 2일은 유급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난임치료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다만, 개정규정 중 유급기간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6일까지

사용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u>6일</u>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u>2일</u> 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 ----- ----- ----- ----- ~~14일~~ ----- ----- ~~7~~ <u>일</u> ----- ----- ----- ----- ----- -----.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④ <u>사업주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는 배우자의 시술 직후 안정 등 돌봄을 위한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휴가 기간은 4일 이내로 하며 그 중 2일은 유급으로 한다.</u>

<u>④</u> (생략)	<u>⑤</u> (현행 제4항과 같음)
---------------	-----------------------